

「트리마제 양산」 1단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 공급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1579-1번지 외
-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3~33층, 11개동, 총 1,066세대 및 부대시설
- ▣ 입주예정 : 2024년 8월 예정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전용 85㎡이하 주택건설량 10% 범위)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계약 면적	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확정	(예비)
민영 주택	65.6298	65	65.9649	22.9783	88.9432	35.7040	124.6472	356	35	(105)
	84.4650	84	84.4650	28.3354	112.8004	45.7174	158.5178	660	66	(198)
	105.6849	105	105.6849	34.7503	140.4352	57.2028	197.6380	50	-	-
	공급세대 합계							1,066	101	(303)

※ 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배정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치는 예비대상자 배정세대수입니다.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등)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추첨으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면적 및 입주예정시기, 배정 세대수 등은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유형별 배정세대 내역

구분	65㎡		84㎡		105㎡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9	(27)	18	(54)	-	-	27	(8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9	(27)	18	(54)	-	-	27	(81)	
장애인	부산광역시	2	(6)	4	(12)	-	-	6	(18)
	울산광역시	2	(6)	4	(12)	-	-	6	(18)
	경상남도	5	(15)	7	(21)	-	-	12	(36)
중소기업 근로자	8	(24)	15	(45)	-	-	23	(69)	
계	35	(105)	66	(198)	-	-	101	(303)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분양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1. 07. 29(목)	당사 홈페이지(http://trimage-yangsan.com)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www.applyhome.co.kr)
건본주택 오픈	2021. 07. 29(목)	방문 예약제 운영 예정
특별공급 접수	2021. 08. 09(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발표	2021. 08. 18(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http://www.applyhome.co.kr)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홈페이지(<http://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 ~ 14:00)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건본주택 별도 문의)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계획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특별공급 요건 및 당첨자 선정방법, 유의사항 등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95 1792 1468 2083"> <thead> <tr> <th>구 분</th> <th>양산시 및 기타지역</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양산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양산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내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함) <p>[추천기관]</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88 495 533 539">구분</th> <th data-bbox="533 495 1171 539">관련법규</th> <th data-bbox="1171 495 1474 539">해당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8 539 533 618">국가유공가 등</td> <td data-bbox="533 539 1171 618">「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 <td data-bbox="1171 539 1474 618" rowspan="2">울산보훈지청 보상과</td> </tr> <tr> <td data-bbox="288 618 533 696">장기복무제대군인</td> <td data-bbox="533 618 1171 69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td> </tr> <tr> <td data-bbox="288 696 533 775">10년 이상 장기복부군인</td> <td data-bbox="533 696 1171 775">「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 <td data-bbox="1171 696 1474 775">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 </tr> <tr> <td data-bbox="288 775 533 853">장애인</td> <td data-bbox="533 775 1171 85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td> <td data-bbox="1171 775 1474 853">부산시청, 울산시청,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td> </tr> <tr> <td data-bbox="288 853 533 931">중소기업근로자</td> <td data-bbox="533 853 1171 931">「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 <td data-bbox="1171 853 1474 931">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td> </tr> </tbody> </table>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부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부산시청, 울산시청,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부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부산시청, 울산시청,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 2021.08.09.(월)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에서 개별조회 가능합니다.(개별통지 불가 및 신청자 직접 확인) 분양일정 및 공급내역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분양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트리마제 양산 분양사무소(Tel. 055-386-1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 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처족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 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